

2013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

1. 일시 : 2013. 10. 30.(수) 08:00 ~ 09:35

2. 장소 :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

3. 참석현황

- 참석이사 : 오연천(이사장), 대학지원실장 박백범(대참), 박명규, 박용태, 박용현, 변대규, 변창구, 안병우, 이영선, 이인원, 이준규, 임정기, 송광수 (이상 13명)
- 불참이사 : 김정배, 이석준 (이상 2명)
- 참석감사 : 김진해, 윤성복 (이상 2명)
- 배석 : 남익현 기획처장 (이상 1명)

4. 회의안건

보고사항

제1호.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

심의사항

제1호. 평의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의 건

제2호. 이사후보초빙위원 구성 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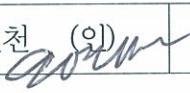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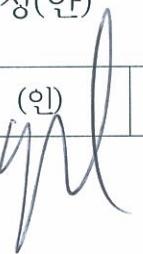
제3호. 평의원회 심의사항 추가 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제4호. 평의원회 구성 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제5호. 기타 정관 일부 개정(안)

제6호.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(안)

제7호.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 구성(안)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 	이사 이영선 (인) 	이사 박명규 (인) 
- 1 -			

5. 개회

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
6. 회의 주요내용

□ 보고사항

가. 제1호. 전차 이사회 회의록

-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, 이사장은 이사들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.

□ 심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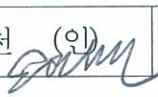
가. 제1호. 평의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의 건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하에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처장이 송광수 이사님과 협의해 의결 문안을 정하기로 함.
-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의결 문안을 서면으로 재심의 한 결과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 (2013. 11. 8)
 - 이사회 의결 사항 중 ‘서울대학교 학칙’에 관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안에 관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.

1.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
2. 모집단위 통합·분리·조정에 관한 사항
3. 전공분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
4. 협동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제2호. 이사후보초빙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 	이사 이영선 (인) 	이사 박명규 (인) 
- 2 -			

-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이사후보초빙위원회 구성(정관 제5조제3항)에 있어 이사가 아닌 내부 인사 2명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운영규정에 반영한다.

다. 제3호. 평의원회 심의사항 추가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정관 제18조제2항의 평의원회 심의사항에 「교육·연구·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」을 추가한다.

라. 제4호. 평의원회 구성 관련 정관 일부 개정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정관 제19조제1항의 “4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46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”로 변경한다.
- 정관 제19조제3항의 “각 대학(원)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하며,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3명 이내로 한다”를 “각 대학(원)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.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.”로 변경한다.
- 정관 제19조제4항의 “직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”를 “직원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”로 변경한다.

마. 제5호. 기타 정관 일부 개정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당초 오류사항인 정관 제15조제2항의 “제14조제1호”를 “제14조제1항제1호”로 변경한다.
-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정관 15조(이사회의 정족수 등) 제2항에서 제9호(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)를 삭제한다.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 	이사 이영선 (인) 	이사 박명규 (인) 
- 3 -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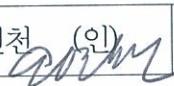
- 정관 부칙에 정부조직개편(2013.2.23. 시행)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(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) 사항을 반영한다.

바. 제6호.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(의결 등)제2항제9호(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)를 삭제한다.
-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(이사후보초빙위원회)제1항 하단의 “제9조 제1항제6호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를 “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에 대하여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사후보초빙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고 한다)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로 변경한다.
- 제14조제3항의 “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”를 “평의원 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”로 변경한다.
- 제14조제4항을 신설하고, 그 내용을 “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고, 최초의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의 결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- 제14조제6항을 신설하고, 그 내용을 “위원회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원 예정 이사의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이사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- 기타 제시된 이사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정화 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하고 이사후보 추천시 참고하도록 한다.

사. 제7호.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 구성(안)

- 위 안건에 관해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- 외부이사 중 변대규, 이영선, 송광수 이사를, 내부이사 중 이인원 이사를 이사후보초빙위원회로 선임한다.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 	이사 이영선 (인) 	이사 박명규 (인) 
------	---	---	--

기타사항

- 차기 이사회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08:00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함.

7. 폐회 선언

- 이상 보고와 토의를 종료하고 09시 35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.

※ 붙임 : 1. 정관 일부 개정 의결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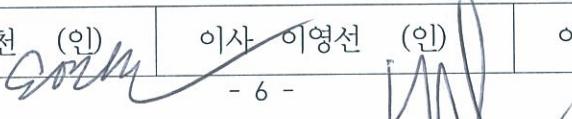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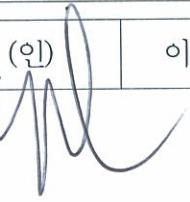
2.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	이사 이영선 (인)	이사 박명규 (인)

<붙임 1>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 개정 의결사항

현행 정관	정관 개정 의결사항
<p>제15조(이사회의 정족수 등)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제14조제1호, 제2호(해임에 한정한다), 제6호, <u>제9호<삭제></u>,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이사회의 정족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4조<u>제1항</u>제1호, 제2호(해임에 한정한다), 제6호,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평의원회) ①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회를 둔다.</p> <p>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. 법령, 정관,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3. 교육·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4. 대학·대학원 또는 학부·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<p><신설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5. 학칙,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, 그 밖의 교육·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.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	<p>제18조(평의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(현행과 같음)2. (현행과 같음)3. (현행과 같음)4. (현행과 같음)5. <u>교육·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u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 	이사 이영선 (인) 	이사 박명규 (인) 
------	--	---	--

현행 정관	정관 개정 의결사항
<p>7. 그 밖에 총장, 이사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</p> <p>제19조(평의원회의 구성)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, <u>47명 이내의 교원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② 교원인 평의원은 각 대학(원)별로 선임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 ④ 직원인 평의원은 <u>직원을 대표하는</u> 인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각 대학(원)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(원)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하며,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3명 이내로 한다. ⑤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19조(평의원회의 구성)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, <u>46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인사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④ 제2항의 각 대학(원)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(원)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.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<u>제2조(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)</u> <u>제5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55조, 제57조, 제60조 및 제61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</u></p>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	이사 이영선 (인)	이사 박명규 (인)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<붙임 2>

이사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

현행 이사회운영규정	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
제8조(의결 등) ② 제2조제1호, 제2호(해임에 한정한다), 제6호, <u>제9호<삭제></u> ,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8조(의결 등) ② 제2조제1호, 제2호(해임에 한정한다), 제6호,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(이사후보초빙위원회) ① 이사회는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14조(이사후보초빙위원회) ① 이사회는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의 이사에 대하여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사후보초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(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)와 <u>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</u> 로 구성한다.	③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(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)와 <u>평의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</u> 로 구성한다.
<신설>	④ 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고, 최초의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의 결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.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	이사 이영선 (인)	이사 박명규 (인)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현행 이사회운영규정	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
<p>④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후보대상자의 자격기준 2. 이사후보대상자의 모집 3. 이사후보대상자의 심사 4. 이사후보대상자의 선정 5. 그 밖에 이사후보대상자의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하여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⑤ (종전 제4항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⑥ 위원회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원 예정인 이사 수의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
<p>⑤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⑦ (종전 제5항과 같음)</p>
	<p>부칙</p> <p>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간 서명	이사장 오연천 (인)	이사 이영선 (인)	이사 박명규 (인)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